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2023. 1.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 코스콤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3
1.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운영 현황	3
2. 개선방안	6
3. 제도개선시 예상문제점 검토	9
III.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11
1.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11
2. 상장사 영문공시 지원방안	12
V. 향후 계획	13
[붙임1] '22년 MSCI 접근성 평가 결과	14
[붙임2]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 개요	17
[붙임3] 외국인 투자자 등록현황	18
[붙임4] 취득한도 제한종목 및 외국인 지분율	19
[붙임5] 주요국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	20
[붙임6] LEI 개요	21
[붙임7] 거래소 영문공시 제공 현황	22

I. 추진 배경

- 외국인 투자제도는 '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
 -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종목별로 전체(10%)·1인(3%)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화 및 장외거래 제한
 - 일반 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한도 제한은 폐지되었음에도 외국인 투자제도는 약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
 -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17년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도 활용도가 떨어져 개설 사례가 없음
 -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계좌 개설 가능(→ '17년 도입 후 활용 사례 없음)
- 외국인의 투자판단시 핵심자료인 영문공시도 아직 미흡한 측면
 - '22년중 코스피 상장사(140社, 17.6%)가 제출한 거래소 영문공시 건수는 총 2,453건으로, 국문공시의 약 13.8% (* '21년 : 9.2%)
 - 법정공시도 정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영문 자동 번역이 제공되는 수준으로, 여타 정보는 영문정보 부재
- 이러한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는 지적
 -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자 등록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인도·베트남 등에서 운영중
 - 영문공시도 아시아 주요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언어를 영어로 채택(홍콩, 싱가포르)하거나 부분* 의무화(대만)
 - *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등 영문공시 의무화('19.1.8.)
 -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 '226월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2211월 ASIFMA Korea Capital Markets White Paper

□ 특히 MSCI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글로벌 지수(index) 사업자로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동 지수를 투자전략에 활용*

* '21년말 기준 동 지수 추종자금 약 16조 달러

○ MSCI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4단계*로 시장을 분류하면서 우리나라는 신흥국으로 분류(아시아 선진국: 일본·싱가폴·홍콩)

* 선진국(DM), 신흥국(EM), 프론티어(FM), 독립(SM)

□ 최근 MSCI는 “글로벌 마켓 접근성 평가”(22.6월)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구체적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공개([붙임1] 참조)

① (외국인 투자자 등록) 사전등록*이 의무화, 요구되는 서류도 많음

* 취득한도 제한·투자동향 파악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금감원에 사전등록하고 외국인 투자자별로 투자자 등록번호 발급

② (장외거래) 채권·주식의 장외 거래시 사전심사 절차가 있어 거래가 매우 불편

③ (통합계좌)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이용시 최종투자자별 투자 내역을 결제(T+2) 즉시 보고해야 하므로 활용도가 떨어짐

④ (영문공시) 영문공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보장이 미흡

➔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여 글로벌 정합성에 맞도록 선진화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

※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논의경과 >

(’22.6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예탁원·금투협·코스콤 유관기관 TF 운영

(’22.8월, ’23.1월) 관계부처(기재부·과기부·문화부·국토부·산업부·방통위) 및 한은 협의

(’22.9월 1차, 11월 4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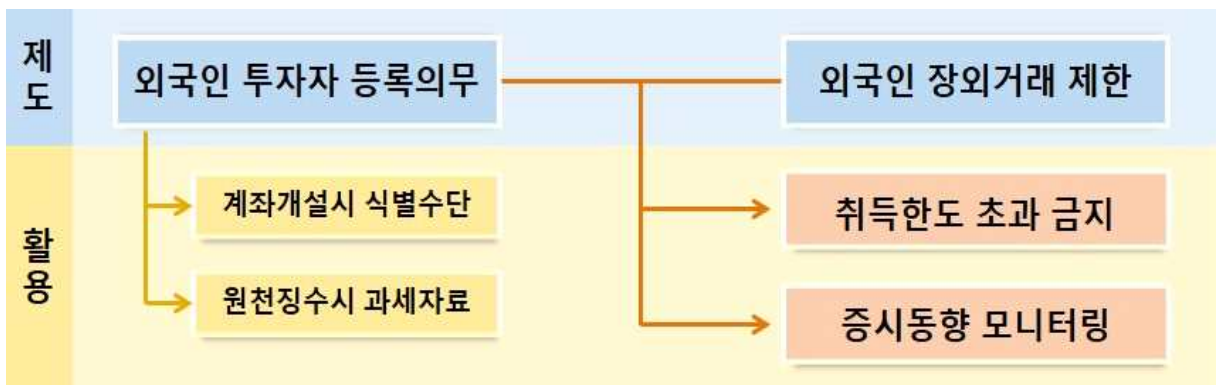
(’22.11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회의

(’23.1월)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본분과회의 및 본회의

II.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1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운영 현황

- ◆ 외국인 투자자를 등록·관리하면서, 장외거래 제한
- ◆ 기간산업종목 등에 대한 취득한도 제한 등에 활용중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 상장증권 최초 취득시, '투자등록번호' 발급·인적사항 등록
 - 외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금감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상임대리인(주로 외국계 은행)을 통해 신청***
 - *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예: 여권, 법인설립증명서 등), 공문, 상임대리인 계약서(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외국 작성 서류는 원본대조 공증 필요
 - 금감원은 등록 접수(약 5일 소요) 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주소, 국적, 상임대리인·보관기관 등)를 입력
 - * FIMS(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 코스콤이 시스템 운영
 - ※ '22년말 기준 총 52,639명(불임3)
- 금감원은 **투자등록 거부**(무국적자, 등록취소 후 2년 미만 인자 등), **투자등록 취소**(명령위반, 매수대금·매도증권 5일내 미납 등) 가능

2.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 다수 투자자 매매를 통합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 계좌개설
 - ①글로벌 운용사·증권사가 금감원에 통합계좌를 등록한 후,
②최종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하면,
③통합계좌 매매체결 내역에 따라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뤄짐
 - 최초 계좌개설시 최종투자자* 목록을 등록하고, 결제 “즉시”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외국인 1인당 취득한도 관리 및 과세 목적)
 - * 최종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사전에 마친 외국인에 한정
- ※ 규제 부담으로 '17년 도입 후 개설 사례는 全無

3. 외국인 장외거래 제한

- 외국인은 상장증권 거래시 장내거래가 원칙
 - 장외거래는 금감원 사전심사가 필요하며, 사후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예외적으로 열거*(장외거래 후 금감원에 지체없이 신고)
 - *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CB·BW 권리행사 등
 - 위반시 시정을 명하거나 투자등록 취소 등의 조치 가능

< 외국인 투자자 등록 후 활용 사례 >

- ① **(식별수단)**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
 - 금융기관 계좌 개설시 등록증을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가능
 - 등록증상 “투자등록번호”를 FIMS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와 같이) 식별수단으로 활용하여 인별 투자내역 관리
- ② **(과세)** FIMS에 입력된 국적정보를 원천소득 과세*에 활용
 - *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을 적용

③ **(취득한도)**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한도를 제한

- 외국인의 매매주문시, 33개 취득한도 관리종목은 FIMS를 통해 잔여한도를 사전확인*하여 한도 초과시 주문을 차단

* 사후신고 대상 장외거래는 거래 후 지체없이 금감원에 보고되어 FIMS에 거래내역 기록 → 취득한도 관리

- 자본시장법(공공적 법인: 한국전력) 또는 기타 법률(방송법 등)에 근거하며, 취득한도 초과시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등 가능

<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 현황(붙임4) >

- 자본시장법, 방송법 등은 33개 종목의 외국인 투자 “통합”한도 제한
 - 한국전력(40%), 가스공사(30%), KT(49%), SBS(불허), 대한항공(49%) 등
 - 한국전력(3%), 가스공사(15%)의 경우, 1인당 한도 있음(내·외국민 공통)

④ **(모니터링)** FIMS에 수집된 정보로 외국인 투자동향 모니터링

- FIMS에 등록된 투자등록번호에 증권사가 계좌정보를 연결하고 거래소 제공 거래내역(주문별 계좌정보·종목·수량·국적 등)을 매칭

➔ 모든 투자등록번호별(외국인별) 투자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

※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조사 등에 필요한 외국인별 거래내역은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증권사로부터 직접 징구(FIMS와 별개)

※ FIMS를 통한 한도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1. 외국인 투자자 등록

◆ 등록의무 폐지 → 법인은 LEI /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

□ (현행) 금융당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의무화

-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등록에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
-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라* 외국인 투자자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
 - * (美·日·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없음. 국가안보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제도 운영(붙임5)

□ (개선) 금융당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

- 외국인은 금감원(FIMS) 사전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 가능
 - 최초 투자시 거래 증권사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 관리**
 - * (내용)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구성) 법인명, 관할권, 주소, 설립일, 법인구분(펀드여부 등), 모회사정보 등(붙임6 참조)
 - **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한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 FIMS에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상시 수집하는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도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
 - * (예) 주요 기관투자자 투자내역을 외환 관련 모니터링 등 필요시 증권사를 통해 수집하는 방식 등
-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본인확인, 계좌정보 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위반시 제재수단도 마련
 - * 증권사가 식별수단(여권번호·LEI)·계좌정보를 관리하므로 정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및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 개정(금감원)

2.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도모

□ (현행)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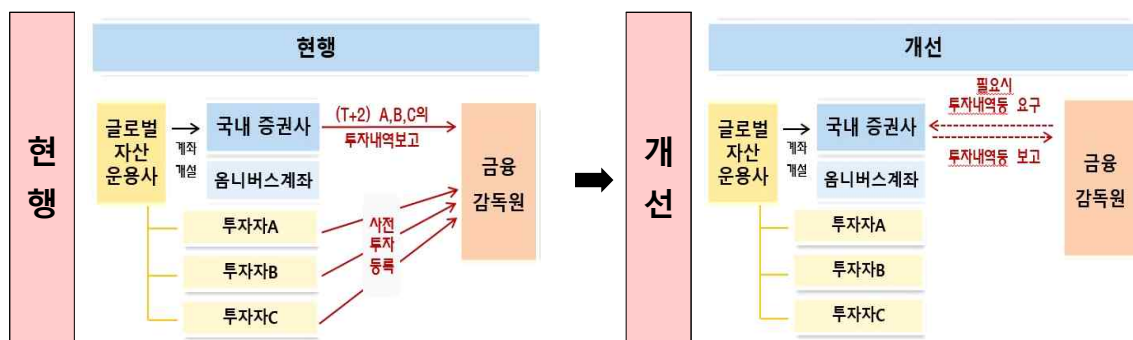
* 최초 통합계좌 개설시 최종투자자(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한 자만 가능) 등록

-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사용하는데 결제 즉시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므로 활용도가 떨어짐
- 규제 부담으로 '17년 도입 후 개설 사례는 全無

□ (개선)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동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자체 관리
- 금융당국 또는 국세청 등에서 감독 또는 과세목적으로 필요시 최종투자자 정보 및 세부 투자내역을 요구하여 징구
- 증권사 등이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제공시 제재(거래정지 등)* 가능

* 국내 A증권사는 계좌정보 불완전제공으로 시카고상품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60일)('18년)



- 다만, 1인당 취득한도가 있는 2개 종목(한전, 가스공사)은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 제한 불가피(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실시간 확인 필요)

➔ 개선된 방식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

3. 외국인 장외거래 제한

◆ 사후신고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고 거래 편의성 제고

□ (현행)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가 좁고 신고부담이 큰 측면

○ 사전심사 없이 장외거래가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

*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CB·BW 행사 등

○ 사후신고시 신고수리(서류심사) 부담 등 존재

※ [장외거래 절차] (원칙) 사전심사 : 사전심사 → 승인 → 장외거래 → FIMS
(예외) 사후신고 : 장외거래 → 신고 → 신고수리 → FIMS

□ (개선) 사후신고 범위 확대,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

○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은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

유형	사례
실질소유자 미변경	▶ 펀드 합병, 모자펀드간 이전, 운용사-펀드간 이전, 동일 운용사내 이전 등
기업합병·구조개편	▶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펀드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 등
현물배당	▶ 외국법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외국인 주주에게 현물배당 등

○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 신고절차 종료)하여 신고부담 완화

*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관행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온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등(서류심사 대상의 약 80%)

< 외국인 장외거래 전면허용 관련 검토 >

- 장외거래 전면허용시 감독상의 문제보다 장내거래 유동성 감소 우려
- 거래비용 등 감안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금번 제도개선 효과를 보아가며 일정기간(예. 3년) 경과 후 재평가하여 전면허용도 적극 검토

* (장내) 증권거래세 0.2%, 양도소득세 면제 ↔ (장외) 각각 0.35% / 20%

3

제도개선시 예상문제점 검토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① (식별수단)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 식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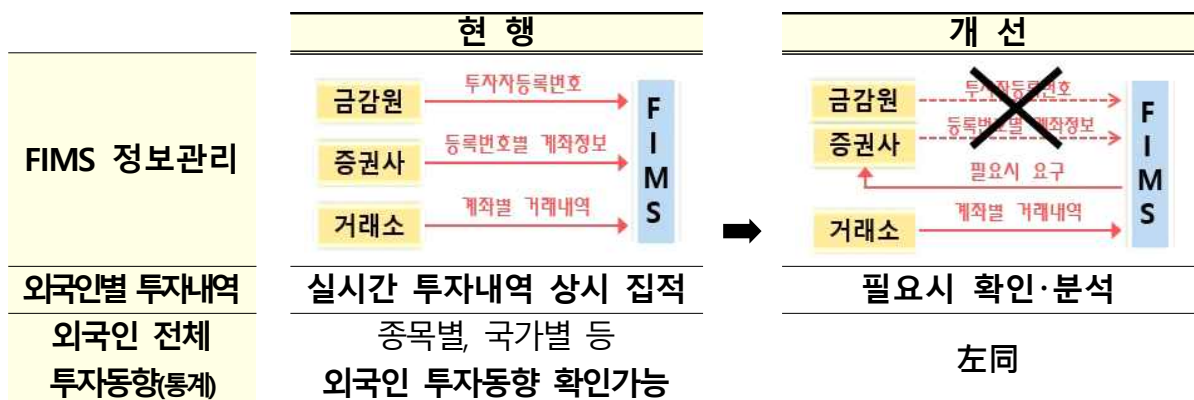
- 기 등록된 “투자등록번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기존 투자자의 불편 방지
- 실명확인증표로 사용되는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이 중단되나, 현재와 같이 개인은 여권, 법인은 법인설립증명서 등 사용가능

② (모니터링)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감시 가능

- 거래소의 거래내역(주문별 계좌·종목·수량·국적 등. 식별수단X)을 활용하여 종목별·국적별·유형별(펀드·연기금 등) 주요통계는 실시간 확인 가능
 - 현재 제공하는 종목별 외국인 보유현황(코스콤, 매일), 외국인 투자동향(금감원, 매월)도 동일하게 제공 가능
 - 외환 관련 모니터링 등 필요시, 주요 투자자의 투자동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 조사 등에 필요한 외국인별 거래내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증권사로부터 직접 징구

< 동 제도개선시 모니터링 방식 변화 >



③ **(과세)** 국적정보 등을 활용하여 금융소득 원천징수 가능

- 등록제 폐지 후에도 LEI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투자자의 국적정보 등을 증권사 등(원천징수 의무자)이 관리
- 통합계좌는 최종투자자가 신청하면 비과세·제한세율을 적용
 - 미신청시 국내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최종투자자별로 귀속 내용을 밝히면 환급토록 하는 방안 검토(기재부)

④ **(취득한도)** 현재와 동일하게 외국인 투자자 취득한도 관리 가능

- 거래소에서 제공된 거래내역으로 33개 취득한도 관리종목에 대한 전체 외국인 보유현황 확인이 가능하여 사전관리 가능
 - 장외거래 내역도 금감원 사후신고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이 FIMS에 기록*되어 취득한도 관리에 반영
- 1인당 취득한도 관리종목(한전·가스공사)은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 기준으로 거래 및 보유내역을 FIMS에서 별도 관리

* 미국도 모든 장외거래 내역을 규제기관이 보고받아 관리 중

※ 1인당 취득한도 제한 2종목(한전, 가스공사)은 통합계좌 거래 제한

Ⅲ.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 ◆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국내증시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문공시를 활성화
 - ➔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지원방안을 병행

1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 ◆ [1단계: '24~'25년]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

- (대상법인) ①자산 10조원 이상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단, 자산 2조원~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

* '21년말 기준, 약 106사 (①93사 + ②13사) (췌 코스피사의 13%)

- 단,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中 영문정보 수요 또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의무화 대상으로 선정

→ ①결산 관련, ②법정공시 공통,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총 82개)

- * ① 결산 관련 사항 : 감사보고서 제출, 자본잠식 발생, 주식배당 결정 등
- ②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 사항 : 유·무상증자 결정, 자기주식 취득 결정 등 (단, 기재내용이 많고 의무 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 영문 요약본 제출)
- ③ 매매거래정지 수반 주요경영사항 : 상장폐지 결정, 주식 소각·병합 결정 등

-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 [2단계: '26년~] 의무화 대상법인 및 대상항목을 확대

-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21년말 기준, 약 234사 (췌 코스피사의 29%)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a) + 일부 법정공시
 - (거래소 공시) 대상항목을 1단계보다 확대
 - (법정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발행 공시(예: 증권신고서)에 대한 영문공시(영문요약본 제출) 의무화 도입
- ※ 단, 2단계부터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상장사의 경우, 1단계 항목부터 적용 (2단계 항목은 '28년부터 적용)
-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2

상장사 영문공시 지원방안

◆ 기업의 영문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시행

- 기업의 영문번역 지원
 - **(인센티브)**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우대혜택 부여
 - **(영문번역 서비스)**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거래소)*의 참여 회사 및 대상서식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확대·개선
 - * '20.9월~'21.9월 56사, '21.9월~'22.12월 108사 참여
 - **(교육·홍보)** 공시교육 커리큘럼(거래소)에 영문공시 과정을 신설하고, 용어집·우수사례 등을 담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 **(영문KIND(거래소))** 영문 자동변환 범위 확대, AI기반 기계번역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 **(영문DART(금감원))**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서식 영문변환 서비스 제공, 영문 재무제표(XBRL) 제공범위 확대* 등
 - * 비금융업 재무제표 본문 → 비금융업 재무제표 주식 및 금융업 재무제표

V. 향후 계획

- **(외국인 투자제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시스템 개발 ➡ 금년 중 시행
-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24년~)를 위해 1분기중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2단계 의무화 방안 확정·추진

< 세부 추진일정 >

	조치사항	일정	소관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통합계좌 활성화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장외거래 편의성 증대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1단계 의무화를 위한 거래소 공시규정 등 개정	1분기	거래소
	영문번역 서비스, 교육·홍보 등 지원방안 시행	계속	거래소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계속	거래소, 금감원
	2단계 의무화 방안 확정 및 규정 개정 등 추진	'25년중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 ◇ 6.9일, MSCI 글로벌 마켓 접근성 평가 결과 발표 ☞ 한국은 총 9개 항목 지적
- (기존 지적) 외환시장 자유화, 외국인투자자 등록 관련 이슈 등 (8개)
 - (신규 지적) SKT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소진 (1개)

- ① **(외국인 동일권리)** 영문공시 실시간 접근이 제한되며, 국제 기관 투자자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에 의문 제기
- ② **(외환시장 자유화)**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역내시장 제약 지속
- ③ **(외국인 투자등록)** 외국인 투자등록이 의무이며, 문서제출 부담 상당
- ④ **(청산·결제)** 옴니버스 계좌* 결제가 투자자 ID별로 이루어지며, 증권 결제 목적 당좌대월(over draft) 이용 불가
- ⑤ **(정보)** 배당기준일 후 배당금 공시되며, 예상 배당금 정보 미제공
- ⑥ **(증권 이동성)** 장외거래 제약이 있으며, 승인절차 등이 비실용적
- ⑦ **(공매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금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계획 없음
- ⑧ **(투자상품 가용성)** 시장 데이터 이용 제한으로 상품 가용성 제한
- ⑨ **(외국인 투자여력^{신규지적})** SK텔레콤 외국인 보유 한도 소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T 외국인 보유한도는 49%로 제한(8.26. 기준 47.3%)

※ [참고1] MSCI 발표 원문

Equal Rights to Foreign Investors: Information disclosure in English has improved but is not always readily available. Company related information is not always readily available in English. In addition, the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of Korean companies have often been questioned by interna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Level: There is no offshore currency market and constraints persist on the onshore currency market.

Investor Registration & Account Set Up: Registration is mandatory and requires a significant amount of supporting paperwork (IRC system).

Information Flow: Information disclosure in English has improved but is not always readily available for all companies.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disclose dividend amounts after the ex-date of the dividends, which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lso, estimated dividends are generally not provided.

Clearing and Settlement: Omnibus accounts enable consolidated trading orders, but settlements are still on a per investor ID basis. Overdraft facilities remain unavailable for securities settlement purpose.

Transferability: The ability to carry out in-kind transfers and off-exchange transactions remains very limited and is impractical due to the rigidity and the approval process.

Short Selling: Is allowed but is restricted to certain securities. A short selling ban was put in place in March 2020 as a COVID-19 related measure. In May 2021, the ban was partially lifted for securities included in the KOSPI 200 and KOSDAQ 150 Indexes. There is no timeline on the potential resumption of short selling for the remaining securities in the Korean equity market.

Availability of Investment Instruments: Restrictions imposed on the use of stock market data have led to limited availability of investment instruments.

Deterioration

Foreign Room Level: “++” to “+”. Following a deterioration in the foreign room of SK Telecom; more than 0.3%, but less than 1% of the MSCI Korea IMI is currently affected by foreign room issues.

※ [참고2] MSCI 한국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

평가항목	'20.6월	'21.6월	'22.6월
1. 시장 개방성			
① 투자자 자격요건	++	++	++
② 외국인 지분 제한 수준	++	++	++
③ 외국인 투자 여력 수준	+	++	+
④ 외국인 투자자 동일 권리 보장	+	+	+
2. 자본 유출입 용이성			
① 자본 유출입 규제	++	++	++
②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	-	-
3. 시장 운영의 효율성			
① 시장 진입			
a)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	-	-
② 시장 구조			
a) 시장 규제	++	++	++
b) 정보 흐름	-	-	-
③ 시장 인프라			
a) 청산 및 결제	-	-	-
b) 수탁	++	++	++
c) 등록 및 예탁	++	++	++
d) 매매	++	++	++
e) 증권 이동성	-	-	-
f) 대주	++	++	++
g) 공매도	++	+	+
4. 투자상품의 가용성	-	-	-
5. 제도적 안정성	+	+	+

* ++ : 문제없음, + : 큰 문제 없음. 개선이 필요한 상황, - : 개선 필요

1. 정의

- 외국인의 상장증권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감원이 (주)코스콤에 위탁·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금투업규정 제6-1조)
 - 외국인 상장증권 취득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금융감독 및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도 활용
 - * 공공적법인(한전)·방송사(SBS등)·통신사 등은 국가기간산업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방송법 등 개별법령에서 외국인 투자한도를 설정·운영중

2. 주요 활용내용

- ① (한도관리) 공공적법인, 방송사 등에 대한 외국인 증권 취득한도 관리
- ② (시장모니터링) 외국인 자금유출입 및 상장증권 거래동향 파악
- ③ (정책 활용) 기재부, 한은에 제공하여 재정·통화정책 수립 지원
 - * 외국환거래법 §20 ②, §25 ②,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9 ③
- ④ (공시) 외국인 투자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시(금투업규정 제6-23)

3. FIMS 운영

-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은 거래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증권 매매체결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
 - 한도관리 종목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매주문이 제출되며, 한도 非관리종목은 매매체결 후 거래내역 기록



붙임3

외국인 투자자 등록현황 ('22년末 기준)

□ 외국인 투자자 현황 : 총 52,639명 등록

(단위 : 명)

구 분	'20년말	'21년말	'22.12월말
개 인	11,878	12,147	12,541
기 관	37,378	38,884	40,098
(집합투자기구)	23,857	25,145	26,148
(연 기 금)	2,323	2,334	2,348
(투자매매·중개업자)	1,005	1,012	1,017
(은 행)	744	759	768
(보험회사)	517	525	536
(기 타)	8,932	9,109	9,281
합 계	49,256	51,031	52,639

□ 국적별 투자자 현황 : 미국, 일본, 케이맨 제도 順

(단위 : 명)

구 분	'20년말	'21년말	'22.12월말
미국	16,202	16,688	17,161
일본	4,249	4,360	4,421
케이맨 제도	3,674	3,808	3,903
캐나다	2,931	3,099	3,216
영국	2,863	2,970	3,065
룩셈부르크	2,323	2,485	2,590
오스트레일리아	1,418	1,492	1,569
독일	831	891	947
중화인민공화국	800	820	888
기 타	13,965	14,418	14,879
합 계	49,256	51,031	52,639

※ '22년중('22.1.1.~12.31) 활동 투자자수: 9,532명

붙임4

취득한도 제한종목 ('22년末 기준)

(단위 : %)

순번	근거법령	종 목*		외국인 한도(a)
1	자본시장법	한국전력	코스피	40
2	전기통신사업법	KT	코스피	49
3		LG유플러스	코스피	49
4		SK텔레콤	코스피	49
5		아이즈비전	코스닥	49
6		세종텔레콤	코스닥	49
7		와이어블	코스닥	49
8		공기업민영화법	한국가스공사	코스피
9	방송법	SBS	코스피	0
10		KNN	코스닥	0
11		티비씨	코스닥	0
12		YTN	코스닥	10
13		현대홈쇼핑	코스피	49
14		현대퓨처넷	코스피	49
15		스카이라이프	코스피	49
16		LG헬로비전	코스피	49
17		한국경제TV	코스닥	49
18		인포뱅크	코스닥	49
19		SBS콘텐츠허브	코스닥	49
20		디지털조선	코스닥	49
21		케이티알파	코스닥	49
22		씨씨에스	코스닥	49
23		CJ ENM	코스닥	49
24		KX	코스닥	49
25	신문법	콘텐츠리중앙	코스피	30
26		아시아경제	코스닥	30
27	항공법	대한항공	코스피	49.99
28		아시아나항공	코스피	49.99
29		대한항공우	코스피	49.99
30		진에어	코스피	49.99
31		에어부산	코스피	49.99
32		티웨이항공	코스피	49.99
33		제주항공	코스피	49.99

* 코스피 18개 종목, 코스닥 15개 종목 ** 1인당 한도 : (한국전력) 3%, (가스공사) 15%

■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같은 투자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전 심사를 실시(강화)하는 추세

□ (미국) CFIUS*가 對美 외국인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및 규제업무 수행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 시행('20.2월)으로 CFIUS의 외국인 투자 관련 심의 대상이 확대*되어 그 권한이 강화

* 핵심 기술·핵심 인프라·민감한 개인정보(TID)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도 심사 대상(특히, 미국기업 지분의 25% 이상 취득시 의무적 심사 필요)

□ (독일) 연방 경제부*가 외국인 투자 심사업무를 수행하며, 크게 독일 모든 산업(Cross-sectoral) 및 방위 산업(Sector-specific)에 대해 심사 실시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 Cross-sectoral 심사는 독일기업 지분을 25% 이상, Sector-specific 심사는 군사기술 및 IT 보안 등 기업 지분 10% 이상 취득시 실시

□ (일본) 국가 안보상 중요한 업종*을 지정하고 각 업종 관련 소관 부처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

* 국가안전·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원자력, 항공, 방송·통신 등 관련 업종으로 '19.8월부터는 직접회로 제조업 등도 대상 업종에 추가

○ '20.5월부터 지정업종 주식의 1% 이상 취득시 사전신고 필수 (기존에는 지정업종 주식의 10% 이상 보유시 사전신고)

□ (중국) 상해, 심천 등 증권거래소가 외국인 투자한도*를 관리하고, 거래내역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

* 전체 외국인 투자한도는 30% 이내, 개별 기업·개인 투자한도는 10% 이내

○ 증권거래소는 전체 외국인 지분이 24% 초과시 그 내역을 공시하고, 30% 초과시 후입선출법에 따라 초과 지분을 매도하도록 공고

- **(개 념)** 금융거래 참여 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11년 G20)
- **(구 성)** 국제표준(ISO17442)에 따라 20자리의 숫자·영문으로 조합된 ①**법인식별기호(LEI 코드)**와 ②**참조데이터(Reference data)***로 구성

* 참조데이터에는 기본정보(상호명, 주소 등) 및 관련 모자관계 정보가 포함

< ① LEI 코드의 구성 >

9	8	8	4	0	0	8	R	R	M	X	1	X	5	H	V	6	6	2	5
Prefix*				예비		법인구분코드(12자리 영문·숫자 조합)												검사숫자	

* Prefix는 LEI 발급기관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한국예탁결제원은 9884

< ② LEI 참조정보의 구성 >

구 분	구 성 항 목
Level 1 Data (who is who)	- 법인(펀드)명, 관할권, 주소, 등록기관(예: 국세청), 설립일, 법인구분(예: 펀드, 정부기관), 법인유형(예: 주식회사), 관리LOU 등
Level 2 Data (who owns whom)	- (법인) 직접/최상위 모회사 정보 - (펀드) 자산운용사, 모자형/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정보

- **(특 징)** LEI는 법인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펀드)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후 1년마다 관련 정보를 갱신*하여 최신화

* (발급비) 年 100,000원 수준, (갱신료) 年 7만원 수준

- **(관련 동향)** '22년 8월말 현재, 전세계에는 209만개* 법인·집합투자기구(펀드)의 LEI가 39개의 LOU**를 통하여 발급·관리

* 미국 26만개, 영국 17만개, 독일 17만개, 이탈리아 15만개, 스페인 13만개

** LOU(Local Operating Unit) : 지역운영기구

□ 거래소 '영문KIND' 홈페이지에 ① 자동변환된 영문공시, ② 상장사 작성·제출 영문공시가 함께 표출

○ (영문 자동변환) 상장사가 국문공시를 제출하면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문 자동변환되어 영문 KIND에 게시

- "공시제목" 자동변환 : 이벤트 발생 사실 및 유형 파악 가능

- "공시제목+레이블" 자동변환 : 이벤트 발생 사실, 유형 및 개략적인 내용(감사의견, 재무수치 등)에 대해 파악 가능

○ (상장사 작성·제출) 상장사가 국문공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영문공시를 작성·제출

* 상장법인이 영문공시를 제출하면 既자동변환된 영문공시 대체

< 영문공시 사례 >

제목 자동변환	<table border="1"> <tr> <td>18</td> <td>2022-08-26 15:48</td> <td>THELMA Therapeutics</td> <td>[KOR] [Revised]</td> <td>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td> </tr> <tr> <td>17</td> <td>2022-08-26 15:48</td> <td>Hanwha General Ins</td> <td>[KOR]</td> <td>Decision on issuance of debt security recognized as capital</td> </tr> <tr> <td>16</td> <td>2022-08-26 15:37</td> <td>NAMSUN ALUM</td> <td>[KOR] [Revised]</td> <td>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td> </tr> </table>		18	2022-08-26 15:48	THELMA Therapeutics	[KOR] [Revised]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17	2022-08-26 15:48	Hanwha General Ins	[KOR]	Decision on issuance of debt security recognized as capital	16	2022-08-26 15:37	NAMSUN ALUM	[KOR] [Revised]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18	2022-08-26 15:48	THELMA Therapeutics	[KOR] [Revised]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17	2022-08-26 15:48	Hanwha General Ins	[KOR]	Decision on issuance of debt security recognized as capital																																																															
16	2022-08-26 15:37	NAMSUN ALUM	[KOR] [Revised]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제목+레이블 자동변환	상장사 작성·제출																																																																		
<p>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p> <table border="1"> <tr> <td>1. Type of sales or supply contract</td> <td colspan="2">Receipt of construction order</td> </tr> <tr> <td>- Name of contract concluded</td> <td colspan="2">신반포2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설비/소방기계공사</td> </tr> <tr> <td rowspan="4">2. Details of contract</td> <td>Contract amount (KRW)</td> <td>5,919,943,920</td> </tr> <tr> <td>Sales of the latest fiscal year (KRW)</td> <td>89,474,130,717</td> </tr> <tr> <td>Ratio to sales (%)</td> <td>6.62</td> </tr> <tr> <td>Classified as a large-sized corporation?</td> <td>No</td> </tr> <tr> <td>3. Counterparty to contract</td> <td colspan="2">(주)포스코건설</td> </tr> <tr> <td>- Relationship to company</td> <td colspan="2">-</td> </tr> <tr> <td>4. Regions of sales or supply (markets served)</td> <td colspan="2">대한민국</td> </tr> <tr> <td rowspan="2">5. Contract period</td> <td>Start date</td> <td>2022-08-30</td> </tr> <tr> <td>End date</td> <td>2025-01-28</td> </tr> <tr> <td>6.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td> <td colspan="2">-</td> </tr> <tr> <td>7. Effective date of contract (receipt of orders)</td> <td colspan="2">2022-08-30</td> </tr> <tr> <td rowspan="2">8. Withholding of disclosure</td> <td>Reasons for withholding disclosure</td> <td>-</td> </tr> <tr> <td>Withholding period</td> <td>-</td> </tr> <tr> <td>9. Other matters to be factored into investment decisions</td> <td colspan="2">-계약금액(원)은 VAT포함 금액임. -최근매출액(원)은 2021년 12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td> </tr> </table>			1. Type of sales or supply contract	Receipt of construction order		- Name of contract concluded	신반포2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설비/소방기계공사		2. Details of contract	Contract amount (KRW)	5,919,943,920	Sales of the latest fiscal year (KRW)	89,474,130,717	Ratio to sales (%)	6.62	Classified as a large-sized corporation?	No	3. Counterparty to contract	(주)포스코건설		- Relationship to company	-		4. Regions of sales or supply (markets served)	대한민국		5. Contract period	Start date	2022-08-30	End date	2025-01-28	6.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		7. Effective date of contract (receipt of orders)	2022-08-30		8. Withholding of disclosure	Reasons for withholding disclosure	-	Withholding period	-	9. Other matters to be factored into investment decisions	-계약금액(원)은 VAT포함 금액임. -최근매출액(원)은 2021년 12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p>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p> <table border="1"> <tr> <td>1. Contents of rumors or media reports</td> <td>ILJIN Materials' main bidding, LOTTE, and four others participated in the event</td> </tr> <tr> <td>2. Channel of rumors or media reports</td> <td>Sedaily</td> </tr> <tr> <td>3. Distributed date of rumors or media reports</td> <td>2022-08-20</td> </tr> <tr> <td colspan="2">4. Company's explanation for rumors or media reports</td> </tr> <tr> <td colspan="2">- This announcement is the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about "ILJIN Materials' main bidding, LOTTE, and four others participated in the event" was made by Sedaily on August 20, 2022.</td> </tr> <tr> <td colspan="2">- LOTTE Chemical participated in the main bidding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ILJIN Materials, however no specific details have been decided.</td> </tr> <tr> <td colspan="2">- We will re-announce the details within a month or when they are decided in the future.</td> </tr> <tr> <td colspan="2">(Disclosure Officer) CFO Jongwon Kang</td> </tr> <tr> <td>5. Re-disclosure date</td> <td>2022-09-19</td> </tr> <tr> <td>* Related disclosure</td> <td>-</td> </tr> </table>		1. Contents of rumors or media reports	ILJIN Materials' main bidding, LOTTE, and four others participated in the event	2. Channel of rumors or media reports	Sedaily	3. Distributed date of rumors or media reports	2022-08-20	4. Company's explanation for rumors or media reports		- This announcement is the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about "ILJIN Materials' main bidding, LOTTE, and four others participated in the event" was made by Sedaily on August 20, 2022.		- LOTTE Chemical participated in the main bidding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ILJIN Materials, however no specific details have been decided.		- We will re-announce the details within a month or when they are decided in the future.		(Disclosure Officer) CFO Jongwon Kang		5. Re-disclosure date	2022-09-19	* Related disclosure	-
1. Type of sales or supply contract	Receipt of construction order																																																																		
- Name of contract concluded	신반포2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설비/소방기계공사																																																																		
2. Details of contract	Contract amount (KRW)	5,919,943,920																																																																	
	Sales of the latest fiscal year (KRW)	89,474,130,717																																																																	
	Ratio to sales (%)	6.62																																																																	
	Classified as a large-sized corporation?	No																																																																	
3. Counterparty to contract	(주)포스코건설																																																																		
- Relationship to company	-																																																																		
4. Regions of sales or supply (markets served)	대한민국																																																																		
5. Contract period	Start date	2022-08-30																																																																	
	End date	2025-01-28																																																																	
6.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																																																																		
7. Effective date of contract (receipt of orders)	2022-08-30																																																																		
8. Withholding of disclosure	Reasons for withholding disclosure	-																																																																	
	Withholding period	-																																																																	
9. Other matters to be factored into investment decisions	-계약금액(원)은 VAT포함 금액임. -최근매출액(원)은 2021년 12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1. Contents of rumors or media reports	ILJIN Materials' main bidding, LOTTE, and four others participated in the event																																																																		
2. Channel of rumors or media reports	Sedaily																																																																		
3. Distributed date of rumors or media reports	2022-08-20																																																																		
4. Company's explanation for rumors or media reports																																																																			
- This announcement is the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about "ILJIN Materials' main bidding, LOTTE, and four others participated in the event" was made by Sedaily on August 20, 2022.																																																																			
- LOTTE Chemical participated in the main bidding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ILJIN Materials, however no specific details have been decided.																																																																			
- We will re-announce the details within a month or when they are decided in the future.																																																																			
(Disclosure Officer) CFO Jongwon Kang																																																																			
5. Re-disclosure date	2022-09-19																																																																		
* Related disclosure	-																																																																		